



보도자료

2015년 4월 29일(수) 배포시점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문의 :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엄 열 과장(☎2110-1520)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이훈식 사무관(☎2110-1567)

법인휴대폰도 본인인증 가능해진다

- 5월부터 서비스 개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29일 법인휴대폰 이용자도 인터넷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SKT, KT, LGU+ 등 이통사별로 준비 작업을 거쳐 5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휴대폰 본인인증은 가입자가 확인되는 개인휴대폰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법인휴대폰으로는 실제 이용자를 알 수 없어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 이통사에 법인휴대폰의 실제 이용자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법인휴대폰을 통해서도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였다는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법인휴대폰의 특성상 이용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직접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도록 하며, 이통사는 서비스 이용 신청의 진위 여부를 해당 법인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게 된다. 이외에도, 이용자 변경에 따른 도용방지를 위해 이통사별로 본인인증 절차의 안전성 확보조치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인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신청 방법은 △해당 법인의 재직증명서 등 법인휴대폰 이용자 정보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이통사 대리점 등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며, 이때 △이용자별로 본인인증에 적용할 비밀번호를 등록한다.

법인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개인휴대폰 본인인증과 같이 웹사이트 인증창에 이름·통신사명·휴대폰번호·생년월일 등 이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신청시 등록한 개인별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이통사에서 보내주는 SMS 인증문자를 확인 입력함으로써 완료된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법인휴대폰 이용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어 개인휴대폰을 별도로 개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편리하게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신회선 이용효율도 제고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인휴대폰 이용자에 대한 본인인증은 2014년도 규제개혁신문고의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법인휴대폰 이용자 약 156만 명이 본인인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끝>

[참고] 법인휴대폰을 통한 이용자 본인인증서비스 추진

□ 배 경

- 법인휴대폰 이용자에게 휴대폰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방통위-이통사간 협의를 통해 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을 추진

※ '14년도 규제개혁신문고의 '개선사례'에 선정된 사안('15년 상반기 개시 목표)

□ 기본 원칙

- (기존방식 활용) 법인휴대폰은 가입 명목이 법인일 뿐 실제 이용자는 개인이므로 **현행 개인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보완하여 적용**
- (도용방지 확보) 법인휴대폰 특성상 이용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통사가 실제 이용자를 직접·신청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이통사별로 **본인인증 절차의 안전성 확보 조치** 시행

□ 세부 절차

- (서류 발급) 법인휴대폰 이용자가 본인인증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 **법인관리자**로부터 본인인증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서류* 신청·수령**
 - * 재직증명서 등 해당 법인의 이용자 관련 정보
- (이용 신청) 법인휴대폰 이용자가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 신청·접수**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별 PW 등록***
 - * 이통사별 안전성 높은 PW 작성규칙 및 보호조치 마련(이용자 변경시 PW 변경)
 - 이통사는 서비스 이용 신청의 진위 여부를 법인 관리자를 통해 확인
- (본인 확인) 이용자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입력창에 **인적정보*와 PW를 입력**하고, 이통사는 **본인인증 결과를 웹사이트에 제공**
 - * 개인폰 본인확인 입력정보와 동일 : 이름, 생년월일, 통신사명, 폰번호, 성별, 내국인 여부 등

□ 기대 효과

- 현재 이통3사는 법인휴대폰의 **실제 이용자**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 **본인인증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며, **개인휴대폰에만 서비스 제공 중**

⇒ 전자상거래 등의 활성화로 **본인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법인휴대폰 이용자에게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편익 증대** 기대

※ '14년말 기준 이통3사의 법인휴대폰 약 156만대에 대해 서비스 적용 가능

- 법인휴대폰 이용자가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개인휴대폰을 가입하여 서비스 이용 중

⇒ 법인휴대폰 본인인증서비스 제공을 통해 **통신회선 이용효율 제고,**
가계통신비 절감 등에 기여

□ 향후 계획

- 이통사별로 서비스 안전성 확보 후 **서비스 개시** : '15. 5월~